

입사생의 등록 및 퇴사·퇴실에 관한 환불 규정

[등록 취소 및 퇴사의 경우]

구 분	대 상	적 용 기 간	환 불 액	비 고
등록 후 취 소	계속재사생, 신입사생 (공통적용)	선발확정 후 입사등록기간 내 취소	납부액의 90% 환불	개원일 전 마지막 평일 (18시)까지 적용
		입사등록기간 이후 7일까지	납부액의 80% 환불	
		입사등록기간 이후 2주까지	납부액의 70% 환불	
		입사등록기간 이후 3주까지	납부액의 60% 환불	
		3주 이후부터 입사일 전까지	납부액의 50% 환불	
학기 중 퇴사	재사생	-	당월 분을 제외한 잔여 월의 70% 환불	23월, 89월은 1개월로 적용
학기 중 강제 퇴사	재사생		환불 없음	사생수칙 위반 (제18조 퇴사처분)

※ 단, 군입대, 취업, 불의의 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퇴사할 경우,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당월분을 제외한 잔여 월의 100%를 환불한다.

※ 분납자의 경우 납부액은 학기납(4개월) 납부액 기준(분납여부 상관없이 환불액 규정 동일)

[일시퇴실의 경우]

구 分	기 간	환 불 액	비 고
학기 중 퇴실	7일 이내	환불 없음	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
	7일 초과	퇴실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% 환불	

※ 예시) 전공실습, 교육실습, 병원치료, 교육 연수 등

[방학운영 기간 중 퇴사·퇴실(등록 취소)의 경우]

구 分	기 간	환 불 액	비 고
등록 후 퇴사·퇴실 (등록취소)	7일 이내	납부액의 80%	
	7일 초과	환불 없음	

※ 방학 중 퇴사·퇴실의 경우 부담금 일체 반환없음